

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안전한 대한민국!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전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희

1. 서울시 자산관리과-13086호('17. 11. 8.) 『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전부개정 법률안(유재중의원 발의)에 대한 의견조희』 관련입니다.
2. 위호와 관련하여, 해당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부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주요 개정 내용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을 「공유재산법」과 「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법」으로 분리하면서, 국가와 지자체의 재산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,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와 현물출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도입, 민간사업자의 일반재산 개발 참여근거 마련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·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
 - 나. 제출기한 : 2017. 11. 14.(화)

- 붙임
1. 관련공문 1부.
 2. 개정(안) 1부.
 3. 작성서식 1부. 끝.

법무처장

수신자 가1~가53

과장 도금수

처장 전결 11/08
엄익철

협조자

시행 법무처-2548 (2017. 11. 08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전화 02-6311-9084 전송 02-6311-4288 / dks0605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